KB국민은행 KB국민은행

「직장인우대적금」특약

제1조 적용범위

직장인우대적금(이하 '적금'이라 합니다) 거래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금거래기 본약관 및 적립식예금약관을 적용합니다.

제 2 조 가입대상

이 적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합니다.

제 3 조 예금과목

이 적금의 예금과목은 정기적금으로 합니다.

제 4 조 계약기간

이 적금의 계약기간은 1년, 2년, 3년으로 합니다.

제 5 조 저축방법 및 저축한도

- ① 이 적금은 정액적립을 원칙으로 하되, 정해진 조건에 따라 추가적립이 가능합니다.
- ② 정액적립은 월 1만원 이상 3백만원 이하 원 단위로 매월 약정한 날짜에 동일한 금액을 저축하여야 합니다.
- ③ 추가적립은 저축일 현재 미납회차가 없는 계좌로 분기별 1회에 한하여 저축할 수 있으며, 저축금액은 월 적립금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5백만원 이하 원 단위입니다. 단, 만기 1개월전까지만 저축이 가능합니다.

제 6조 이자

이 적금의 이자는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<mark>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</mark>에 게시된 이율(이하 '기본이율'이라 합니다)로 셈하여원금과 함께 지급합니다.

제 7 조 우대이율

- ① 이 적금은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게시된 제2항의 직장인우대이율 내지 제3항의 보너스 저축우대이율을 기본이율에 가산하여 적용합니다. 단, 모든 우대이율은 만기해지 계좌에 대하여 계약 기간동안 적용합니다.
- ② 직장인우대이율은 이 적금 가입자가 신규일이 포함된 달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달까지「급여이체실적^{주)} 월 합산금액 50만원 이상」또는「KB국민카드 매입실적 월 합산금액 30만원 이상」인 달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 적용합니다.
 - 주) 급여이체실적 인정기준
 - KB국민은행과 급여이체 또는 대량이체 계약에 따른 급여성 선일자, 탑라인, 프리미엄뱅킹 등에 의한 급여이체(단, 급여이체 인정금액은 건별 2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)
- ③ 보너스저축우대이율은 추가적립 금액에만 적용합니다.

제 8 조 특별중도해지

- ① 계약기간의 1/2 이상을 경과한 계좌로 계약기간 중에 이 적금 가입자가 퇴직, 창업, 결혼, 출산, 이사,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특별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.
- ② 특별중도해지 시에는 기본이율을 적용하며 제7조에서 정하는 우대이율은 가산하지 않습니다.



부 칙

이 약관은 2014.7.21 부터 적용합니다.

<u>부 칙</u>

이 약관은 2020.10.12 부터 신규가입고객에 한하여 적용합니다.

본 특약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제공됩니다.